

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2007. 11. 15.
제3차 개정 2020. 06. 1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(이하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24조의3(개방이사추천위원회)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기능) ① 추천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대학평의회(이하 “평의회”라 한다)에 두며,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2.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
3.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4.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검증에 관한 사항
5. 기타 추천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

[조명변경 2020.06.11.] [전부개정 2020.06.11.]

제2장 조직

제3조(구성 및 위원정수) ① 평의회 의장은 법인의 개방이사 또는 감사 추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정관 제24조의3에서 정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지대학교 평의회 3인
2.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영위원회 1인
3. 이사회 1인
4.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1인
5. 총동문회 1인

[전부개정 2020.06.11.]

제4조(의장 등) ① 추천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하되 그 임기는 추천위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④ 추천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(개정 2020.06.11.)

제5조(임기) ①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추천된 임원의 선임이 확정되는 날로 종료된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전에 추천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천위원회 의장은 즉시 제3조 제2항의 각호 해당 기관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,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한다.

[전부개정 2020.06.11.]

제3장 회의

- 제6조(회의)**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.

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

- 제7조(개방이사 추천)** 법인으로 부터 정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의 추천을 의뢰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개방이사 후보자)** ① 개방이사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,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,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-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)**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- 제10조(개방감사 추천)** 개방감사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추천절차 및 자격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보칙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, 정관 및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부-362, 2018.07.12)

- ① 이 규정은 2018년 07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중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02, 2020.06.11.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